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3. .  
행정안전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5일, 한병도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1.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2.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5.2.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한병도의원)

현행법은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

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발생일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까지 소요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가의 수습·복구체계에 신속성을 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서기영)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으로 특히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한 선포 건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국비를 교부함으로써 피해지역의 조기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심의 예외 사유를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령이 특별재난의 범위에 대하여 일정 피해금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을 정하고 있는 것<sup>1)</sup>에 비해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현행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국고지원 대상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선포 심의 절차를 배제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두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①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1의2.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은희)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